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예산(안)』 - 의회사무국

검토보고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12. 9.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26년도 예산(안) - 의회사무국』

검토보고서

1. 경과

의안 제670호로 2025년 11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2026년도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42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예산규모(총괄)

가.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995,815,910	922,849,835	72,966,075	7.91
일반회계	968,659,997	896,061,346	72,598,651	8.10
특별회계	27,155,913	26,788,489	367,424	1.37
의료급여	760,390	677,164	83,226	12.29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56,600	52,200	4,400	8.43
주 차 장	24,312,382	24,312,125	257	0.00
건축안전	2,026,541	1,747,000	279,541	16.00

나. 주요재원(총괄)

○ 일반회계 **968,659,997천원**

- 지방세수입 224,929,323천원
- 세 외 수 입 89,616,709천원
- 지방교부세 등 10,406,000천원
- 조정교부금 등 102,300,000천원
- 보 조 금 449,618,165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1,789,800천원

○ 특별회계 **27,155,913천원**

- 의료급여기금 760,390천원
- 빨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600천원
- 주차장 24,312,382천원
- 건축안전 2,026,541천원

4. 2025년도 명시이월(총칙 제5조)

○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24개 사업 16,205,711천원

5.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편성 내역

가. 세입예산: 해당없음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쪽수	세부사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6,740,236	6,220,881	519,355
203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2,257,431	2,126,391	131,040
203	의정활동지원	1,459,292	1,397,689	61,603
204	의정운영	342,763	315,312	27,451
207	의회청사관리	249,046	223,420	25,626
208	직원 교육훈련 운영	39,100	29,600	9,500
209	후생복지 운영	167,230	160,370	6,860
209	의정홍보 활동강화	343,464	282,396	61,068
209	의정활동홍보	249,278	216,010	33,268
210	홈페이지 운영	94,186	66,386	27,800
211	인력운영비(의회사무국)	3,929,037	3,602,852	326,185
211	인력운영비	3,929,037	3,602,852	326,185
215	기본경비(의회사무국)	210,304	209,242	1,062
215	기본경비	210,304	209,242	1,062

다. 세출예산 규모

○ 구 전체예산의 0.68%인 67억 4,024만원이 편성되어

2025년도 예산 62억 20,88만원 대비

5억 1,936만원이 증액(8.35%)됨.

라. 주요 사업 증감내역 및 검토

- p203 의정활동지원은 6,160만원 증액하여 14억 5,929만원 편성.
 - '월정수당'은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3%) 반영으로 반영하여 월 88,990원씩 인상됨에 따라 1,815만원 증액,
 - '공무국외출장'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사무관리비로 항목을 조정하여 1,159만원 감액,
 - '의원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른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소비자상승률(2.1%)을 반영하여 1,523만원 증액,
 - '의원연구단체지원'은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1인 정책개발비 상한액으로 조정하여 350만원 증액,
 - '교섭단체 지원'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교섭단체 예외 편성 금액분(전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를 반영하여 43만원 감액,
 - '의원 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1인 정책개발비 상한액으로 조정하여(1인 300만원→500만원) 3,400만원 증액 등에 기인함.
- p204 의정운영은 2,745만원 증액하여 3억 4,276만원 편성.
 - '기간제근로자보수'는 2025년 속기공무원 1명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보조인력 충원을 위하여 3,754만원 신규 편성,
 - '공무국외출장 통역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별도 편성,

- '소송비용'은 구의회 관련 소송 발생 시 대응을 위한 비용으로 1,308만원 신규 편성함.

○ p207 의회청사관리는 2,563만원 증액하여 2억 4,905만원 편성.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의회청사 청소용역'은 2026년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 사무관리비 중 'UPS 배터리 교체'는 2025년 구매 완료로 600만원 미편성,
- '구의회 3층 의원실, 복도 도배' 770만원, '본회의장 단상 바닥매트 교체' 510만원, '청사 방역비' 63만원은 본회의장 및 의원실 환경 정비를 위해 신규 편성,
- '제9대 재직 기념동판 제작' 500만원, '제10대 의원 노트북 구매' 2,992만원은 지방의회 대수 변경에 따라 신규 편성 등에 기인함.

○ p209 후생복지 운영은 686만원 증액하여 1억 6,723만원 편성.

- 포상금 중 '명절선물' 항목에 기간제근로자 지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근거하여 편성.
- '문화생활 지원'은 의원 및 직원 60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여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총무과에서도 동일 취지의 예산을 편성하여 심사 중임.

○ p209 의정활동홍보는 6,107만원 증액하여 3억 4,346만원 편성.

- 사무관리비 중 '제9대 의회사 제작' 1,300만원 신규 편성, '옥외 홍보 게시판 정비' 100만원 증액은 지방의회 대수 변경에 따른 편성이며,

-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 '의정활동 방송콘텐츠 구입'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단가 조정으로 총 630만원 증액,
- 자산물품취득비 중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는 기존 2017년 구매 후 카메라의 내구연한(8년) 경과에 따라 교체를 위해 1,357만원 신규 편성.

○ p210 홈페이지 운영은 2,780만원 증액하여 9,419만원 편성.

-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과업내용 조정에 따라 '인터넷방송운영 홈페이지 유지관리' 2,220만원 감액, '홈페이지 전면 개편' 비용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 주요 요인임.

○ p211 인력운영비는 3억 2,619만원 증액하여 39억 2,904만원 편성.

- 이는 공무원 보수인상률(3.5%) 반영 및 시간선택제임기제(방송·홍보 분야) 신규 채용 등에 기인함.

마. 명시이월사업 : 해당 없음.

바. 주민참여예산 : 해당 없음.

사. 기금 : 해당 없음.

아. 검토 의견

- 202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규모의 0.68%인 67억 4,024만원으로 2025년 대비 5억 1,936만원 증액함.
- 의회사무국의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 2026년 제10대 지방의회 개원 대비 준비 비용 반영,
 - 공무원 보수인상을 적용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제10대 지방의회 개원에 따라 편성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의정활동 안내서, 의원 기념패, 의원명패, 축근조기, 재직 기념 동판, 제9대 의회사 등 필요 물품 제작·구매
 - 의원실 및 복도 도배, 본회의장 단상 바닥매트 교체, 청사 방역 소독, 옥외 홍보게시판 정비 등 의회 환경 정비
- 인건비 증액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월정수당 인상 반영
 - 속기보조 인력 및 방송·홍보 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
 - 공로연수 대상자 증가에 따른 포상비·교육훈련비 증가
 - 인력운영비 전반의 증가
- 종합적으로, 금번 예산안은 지방의회 대수 전환 및 인건비 상승 등 증액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요인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 · 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 · 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 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 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 · 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 · 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